

월드비전 「꿈꾸는아이들 사업」 업무협약서

구산사회복지관과 월드비전은 「꿈꾸는아이들 사업」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의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지지를 받고 비전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.

제2조 (협력내용)

1. 월드비전은 구산사회복지관에 꿈꾸는아이들 사업의 사업비, 매뉴얼, 직원교육 등을 지원한다.
2. 월드비전은 꿈꾸는아이들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원 마련 및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.
3. 구산사회복지관은 꿈꾸는아이들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를 탐색하여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적, 경제적, 기술적 지원 등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한다.
4. 구산사회복지관은 월드비전 후원자서비스에 적극 협력하여 원활한 업무가 진행 되도록 한다.
5. 꿈꾸는아이들 사업 아동의 활동 및 변화내용의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한다.
6.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협력할 수 있다.

제3조 (협력기간)

본 협력내용은 협약일로부터 효력을 갖으며,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4조 (파트너십 계약)

월드비전과 파트너십기관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월드비전 파트너십사업 계약서를 작성한다.

제5조 (협약의 변경 및 해지)

1. 양 기관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협약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.
2. 어느 일방이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 (비밀준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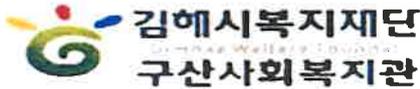
1.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 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·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본 조항은 본 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유효하다.

제7조 (기타사항)

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.

본 협약서는 각 당사자가 기명·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11월 28일



구산사회복지관
관장 조재판





월드비전 경남지역본부
본부장 전광석

